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3. 11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6. 3. 12

다. 상 정 일 자 : 제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96. 3.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여철 민원봉사실장)

가. 제안이유

구민의 정보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개대상 정보 : 법령이나 조례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과 특별한 사유로
공개할 수 없는 행정정보를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정함(안 제6조)
- 공개여부 결정 :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토록 함
- 공 개 방 법 : 공개일시 및 장소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당해 공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비 용 부 담 :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함
-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운영 :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시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사(안 제14조)
- 이 의 신 청 : 거부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 집행기관이 작성,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 주민에게 공개 하므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제고와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이미 1991년 청주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자치법규화 되었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지되므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은 이미 인정된 사항임.
- 아직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994년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이 시달되어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을뿐 아니라,
- 행정정보공개는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보다 많은 정보를 자유로이 신속하게 이용코자하는 주민의 욕구와 권익을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행정의 투명성보장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관, 민간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므로써 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단 본 조례제정(안) 내용중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① 먼저 조례구성 체계면에서는

- 본 조례는 조문수(20개)가 다소 많은 점을 감안, 법문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3개의 장으로 구분한 것 같으나 이중 제3장의 제명을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는것 보다는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 이유 : 본 조례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주민등이 공개 청구시 공개대상, 절차 및 비공개시 이의신청 등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취지는 이의신청시 공개여부를 심의, 판단하는 수단적 성격으로서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므로 주된 내용을 표시하므로써 이해가 쉽다고 생각

- 제3장의 제명을 '이의신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각 조문의 배열순서도 다소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 제16조(이의신청) ⇒ 제12조로
 - 제1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 제15조(위원의 책무) ⇒ 제13조-제16조로 조정

② 조문의 내용중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 검토
 - ▷ 이유 : '목적'에 세세한 부분을 모두 나열할 경우 법문의 간결성, 정확성 등에 오히려 의문과 문제제기 우려 — 정보공개 의무와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사항만 정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면 문제소지

○ 제2조(정의)의 각호 내용에 대하여는

제1호 내용중 중복 표현된 부분삭제(.....^한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제3호 내용중 내용보완 및 불명확한 부분수정(...^{행정정보를 집행기관에서 공표}집행기관이 이 조례의 규정에

^{하거나 주민의}의하여 행정정보를 ^{공개}열람 청구시 ^{열람에}자료를 제공하거나.....)

- 제6조(공개대상정보) 제6호의 '라'목의 내용은 제6호 본문 내용과는 상이하므로 ('라'목은 집행기관의 행정수행 과정에 관련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음) '라'목을 제7호로 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제7, 8호'를 각각 '제8, 제9호'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제8호 본문의 '제1호 내지 '제7호외의'는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로 수정필요

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 행정정보의 체계적인 분류 및 정리, 생산, 수집된 정보의 등록관리, 행정정보 색인, 검색체제 구축,

행정정보의 보존대책 필요한 시설 및 인력확보 등 사전준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로 부칙에 명시해둔 상태에서 실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준비 미비 시행규칙 제정지연 등으로 인하여 의욕적으로 출발한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사항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